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5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8.

발 의 자:김상훈·태영호·김희국

윤두현 • 양금희 • 한무경

강기유 • 조수진 • 박대출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동차·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.

그러나 2018년 기준 전기를 연료로 하는 시내버스의 보급 대수는 2 29대로 전체 시내버스 보급량 중 1%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·연료전 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 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5호, 제9호의2"를 "제5호" 로, "적용한다"를 "적용하며, 제9호의2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	l
호의2, <u>제5호, 제9호의2</u> , 제9호	<u>শ্র5ই</u>
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	
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	
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	
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	
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	
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	
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
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	
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	
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
체결된 것에만 <u>적용한다</u> .	<u>적용하며, 제9호의2</u>
	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
	한 것에만 적용한다.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